

# 자동차사고에 관한 합의의 효력

손 병 돈 <한국자동차보험(주) 자동차보험부장>

## 1.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자동차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사고처리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가 종결된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그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 도주, 음주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단지 처벌이 경감될 수 있는 참작사유가 된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과실사고가 아닌 한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외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치 않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와같은 합의, 즉 형사합의는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경감시키는 기능은 있으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민사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

## 2. 민사합의의 효력

합의는 원래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의는

가·피해자간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약정이며, 통상 가·피해자 쌍방이 절충을 통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배상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타협점을 찾아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종결하는 약속이므로 손해배상관계를 확정시킨다는 효과면에 있어서는 민법상 화해(민법 제731조)와 다를 바 없다.

이와같이 합의의 법률적인 효력은 손해배상관계를 중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들 주위에서 듣고, 경험한 바로는 합의문제를 둘러싸고 합의금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합의서에 문구를 어떻게 표현하여야 하는지, 합의를 한 후에 합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에서는 합의를 둘러싼 여러

**합의후의 추가 배상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는 합의 당시의 당사자간 의사가 무엇인지, 과연 어떠한 뜻으로 합의를 하였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가지 문제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이 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권리포기조항을 삽입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이후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가해자로서도 합의금액이 실제의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합의를 한 후에 피해자의 부상이 악화되었다든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든지 하는 경우, 즉 합의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나타나 합의금액과 현실로 발생한 손해액간에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같은 경우 합의후에 예상하지 못한 큰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반대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여 일단 성립한 합의를 가법계 반복시킨다면 합의의 사회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즉 예상하지 못한 증상의 악화나 후유증의 발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구제와 다른 한편, 그 합의로써 모든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있는 가해자의 기대보호라는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



로의 손해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성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건 사례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어 합의 당시 6% 정도의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합의후

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합의후의 추가배상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는 ①합의시 부터 합의가 성립될 때 까지의 시간 ②합의금과 실제 손해액과의 차이 ③피해자의 직업, 지식, 경험 유무 ④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당시의 당사간 의사가 무엇인지, 과연 어떠한 뜻으로 합의를 하였는지를 규명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경우에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는 부인되는지를 알아 보자.

### 3.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 피해자의 추가배상청구를 부인한 경우 —

#### 사례 I

종합보험에 가입한 봉고1톤 화물차에 충격되어 8주진단의 상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12일 간의 입원치료 및 18일간의 통원치료후, 가해자를 대리한 보험회사와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조로 696,000원을 수령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 후 통원치료를 계속 하였지만 왼쪽 손가락부분에 후유장해(6%)가 발생한 경우.

합의가 성립된 후에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해 피해자가 “합의당시 앞으

에 후유장해로 인한 추가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89. 7. 25선 고, 89다카 968참조)

#### 사례 II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가 거의 끝날 무렵 퇴원한 후, 가해자를 대신한 보험회사와 “위자료,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금 일체”조로 2,698,000원을 수령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위 사고로 후유장해(15%)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 사례에서도 피해자는 부상 치료가 거의 끝나 상처가 어느 정

도 고정된 시점에 보험회사측과 충분한 교섭 끝에 합의를 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는 그 당시 이미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87. 7. 20선고 87 나2126참고)

#### 4. 합의의 효력을 한정적으로 인정한 경우

— 추가배상을 인정한 경우 —

##### 사례 I

피해자(남. 32세)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7주 진단으로 얼굴 및 가슴에 열창을, 어깨부위에 골절상을 입고 치료하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소액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그후 정신질환과 음경지속발기증이라는 증세가 나타나고 정신과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으로 정신장해(50%)가 남게된 경우.

이와같은 사례에서 피해자는 합의 당시 자기의 부상의 정도가 열창과 골절이라는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병명으로 알고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후에 정신질환이라는 증상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가 50%라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비록 합의서상에 “일체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합의후에 생긴 손해가 당초의 손해와 비교하여 극심한 차이가 있으며 더욱이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가·피해자간의 합의의 효력은 후의 손해에는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는 정신질환의 치료비와 후유장해(50%)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88. 4.27선고, 87 다카74참조)

##### 사례 II

피해자는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상당히 호전되고 향후 약 8개월간 안정가료를 취하면 임상증상이 없어진다는 담당의사의 말만 믿고 가해자를 대리한 보험회사와 4,091,000원을 지급받고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퇴원하여 자가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병적인 상태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중한 후유장해(95%)가 발생한 경우.

이 사례의 경우도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전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전문가인 의사가 안정가료를 한다면 호전된다는 의견이었음) 조급히 소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피해자는 합의후 95%라는 중한 정신장해(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정도이다)를 남긴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합의후에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87. 4. 14선고, 86 다카994참조) ㉞